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 | |
|----------|------|
| 의안 번호 | 1779 |
|----------|------|

제출년월일 : 2020년 8월 12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1. 제안이유

가. 서울시에서는 시민의 자율적인 문화 예술 활동을 진작시켜 서울의 문화 예술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 예술 진흥과 시민의 문화 예술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

나. 이에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서울문화재단 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1) 사 무 명 : 서울문화재단 출연금

2)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 필 요 성 : 서울의 문화예술 진흥과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등 사업수행을 위하여 출연 필요

4) 사무내용

-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문화예술활동의 지원
- 문화예술의 교육 및 연구
-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 시민의 문화향수 및 창의력 증진
- 지역문화의·육성 지원 및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4) 소요예산 : 64,183,074천원

※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나. 서울문화재단 기관 개요

1) 소재지 : 서울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2) 규모 : 대지 1,520.2㎡, 건물 2,367.41㎡ (6층 건물)

3) 전경 및 위치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21년도 예산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문화정책과 문화협력팀 양윤미 (☎ 2133-2531)